

2023년도 제2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11.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임형주,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21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997건(안건번호 제2023-156928호~159924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56928호~156955호(순번 1번~28번)는 블로그에서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거래 글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6956호~156960호(순번 29번~33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6961호~156977호(순번 34번~50번)는 웹하드에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 안건번호 제2023-156978호~159924호(순번 10번~2997번) 불법

복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4,095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2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김선화 선임: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제2호 안전 비공개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고, 제2호 안전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0쪽~13쪽은 저작권보호심의 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전의 저작물명,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3-229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김선화 선임: 이번 심의안전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29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154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의 내용으로 대신하겠음.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 내지 28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 뮤지컬 촬영물 등 영상 판매 및 교환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한 사안 총 35건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이 다수의 뮤지컬의 불법복제물을 판매 또는 교환하였거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러한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각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여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으로 볼 수 있으며,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 내지 28번, 뮤지컬 영상 판매 및 교환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추가 의견 없음.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 내지 28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9번

내지 3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불법 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사안 총 5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동일 게시자의 '☆☆☆' 블로그에 일본 만화 '♥♥♥', '♠♠♠♠' 등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를 통해 각 원천게시물로 이동하여 만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는데 모두 현재 국내에서 정식 발간되어 연재중인 만화의 미발매 최신화로 확인되고, 원천게시물은 모두 '◆◆◆◆'에 게시된 것으로 확인됨.

'◆◆◆◆'는 2022년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임.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직접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여 그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9번 내지 33번,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9번 내지 33번에 대해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4번 내지 50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만화 불법복제물 총 19건임.
순번 34 내지 48번은 모두 국내 정식 발간된 저작물이고, 49번 내지 50번은 2020년부터 일본 만화 잡지에서 연재중인 만화로 국내에는 아직 미발매되었음.
심의 대상 게시물들이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과 잠재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34번 내지 50번은 모두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로, 특별히 의견 없으실 것으로 생각됨.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의견 없음.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4번 내지 50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함.
- 김선화 선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51번 내지 2997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

를 요청한 건으로, 총 4,095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바비'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127번은 영화 '바비'로, 2023. 7. 19. 개봉하여 현재 극장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임.

(영화 '하트 오브 스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13번은 영화 '하트 오브 스톤'임. 2023. 8. 11.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609번은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임. 모니터링일 기준 드라마 최신 회차의 전체 분량을 다운로드 형태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3건을 포함하여 순번 51번부터 2997번까지 총 4,095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출판물, 게임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모니터링 안전 중에 개봉한 지 오래된 영화들이 계속 부의되는 것으로 확인됨. 20년도 더 지난 영화들도 있음. 몇 번

이야기한 바 있지만,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는 행정조치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최신 영화 등의 킬러콘텐츠 등을 고려한 것임. 아마 규정에 5년 이내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정된 행정력을 고려할 때 최신 영화 위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됨.

- 김선화 선임: 심의위원회 규정에 5년 이내 최신영화를 위주로 심의한다는 기준은 없음. 모니터링하는 부서에 확인한 결과 모두 권리자가 보호원에 보호를 요청한 저작물로 확인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권리자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시정권고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 김선화 선임: 다른 분과위원회에서는 오래된 개봉작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으로 생각됨.
- A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으나 여기서 우리가 정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되므로 전체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의견임.
- B 위원: 분과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같은 의견을 말씀하셨으므로 이번에는 전체위원회에서 꼭 논의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 해당 안건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게임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51번 내지 299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3-156928호~159924호(순번 1번~2997번)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2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18.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임형주

위원 홍승기